
원료목록보고서 작성요령



대한화장품협회

목 차

1. 원료목록보고 개요

- 원료목록보고란

2. 시스템 개선내용

- 메인화면
-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3. 원료목록 사전보고

- 원료목록보고 사전보고 전환체계안내
- 원료목록사전보고 프로세스
- 자주하는 질문 (FAQ)

Chapter 1

1. 원료목록보고 개요

- 원료목록보고란?

1. 원료목록보고개요

원료목록보고란?

(기존화장품법/19.01.01~'19.02.28 보고)



- 「화장품법」 제5조제3항(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 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 품목 수, 품목별 생산·수입량 및 생산·수입 금액 등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 보고의무자 : 제조판매업자
- 보고사항 : 2018년 한해 동안 생산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 보고기한 및 보고서 제출기관 : 2019년 2월 말 (사) 대한화장품협회
- ✓ 국내 제조한 제품에 한함
- 보고 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1. 원료목록보고개요

원료목록보고란?

(기존화장품법/19.01.01~'19.02.28 보고)



Chapter 2

2. 시스템 개선 내용

- 메인 화면
-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2. 시스템개선내용

실적보고 사이트(메인)

KCA 생산실적 & 원료목록보고

생산실적 & 원료목록보고

원료목록 보고

2019.1.1(화)~2019.1.18(금)

KCA 원료목록보고 & 생산실적보고

STEP1 원료목록 보고

STEP2 생산실적 보고

2019.1.21(월) 오픈 예정

✓ (기존) **생산실적보고** → **원료목록보고** → **제품비교제출** → **제출**

✓ (개편) **원료목록보고** → **생산실적보고** → **제출**

❖ 반드시 원료목록 보고 후 생산실적 보고하여야 함

2. 시스템개선내용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현행) 등록 절차

- ① 생산실적 작성 (수기등록/엑셀등록)
- ② 원료목록 작성 (수기등록/엑셀등록)
- ③ 제품비교&제출 (제품명 기준으로 비교)
- ④ 관리자 승인 (접수, 검토)



(개선) 등록 절차

- ① 원료목록 작성 (수기등록/엑셀등록)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 원료목록 작성 > 제출
- ② 생산실적 작성 (수기등록/엑셀등록)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 생산실적 작성 > 제출
- ③ 관리자 승인 (접수, 검토)

✓ (기존) 생산실적보고 → 원료목록보고 → 제품비교제출 → 제출

✓ (개편) 원료목록보고 → 생산실적보고 → 제출

❖ 반드시 원료목록 보고 후 생산실적 보고하여야 함

2. 시스템개선내용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1.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보고 회사,
보고 담당자 정보 작성

정보 불러오기 가능

1. 수기 등록

- 성분명/제품유형/기능성유형 검색 팝업 기능
- 윗줄 복사하기 기능
- 임시저장시 자동 원료검사 (표준명, 배합금지 여부 등)

2. 엑셀 등록

- 업로드 및 임시저장시 자동 원료 검사 (표준명, 배합금지 여부 등)
- 확장자 호환 (xls, xlsx 모두 가능)

2. 원료목록
작성

원료목록 식약처 제출 보고서
(5호서식, 6호서식) 인쇄 가능

3. 제출

원료목록보고 시스템 개선사항

- ✓ 등록절차 간소화 (이전 보고내용 불러오기, 임시저장하기, 업로드 시 자동 원료검사, 원료목록내용 복사하기 등)
- ✓ 서버 및 오류 개선 (엑셀파일 xls, xlsx 확장자 호환, 데이터 업로드 로딩시간 단축 및 오류 방지)

2. 시스템 개선 내용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STEP 1 :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 원료목록 작성 > 제출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보고업체

상호	대한화장품협회	제조판매업등록번호	9989
대표자명	홍길동	제조판매등록일자	Nov 10 201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여의도동, 금산빌딩) 9078호		

담당자 정보 *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성명*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		
이메일*	<input type="text" value="kcia"/> @ <input type="text" value="kcia.or.kr"/>	직접입력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text" value="010"/> - <input type="text" value="0000"/> - <input type="text" value="0000"/>		
전화번호*	<input type="text" value="02"/> - <input type="text" value="000"/> - <input type="text" value="0000"/>		
팩스번호	<input type="text" value="032"/> - <input type="text" value="000"/> - <input type="text" value="0000"/>		

- ✓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 원료 목록 작성 ⇒ 제출 순으로 보고
- ✓ 담당자 정보는 “생산실적 및 원료 목록보고 전용 아이디 신청” 시 입력한 정보 자동 불러옴 (수정 가능)
- ✓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수기)” 또는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기” 선택 후 보고

2. 시스템 개선 내용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목록 작성 >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

원료목록 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 원료목록 작성 > 제출

원료목록 작성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

+추가 -삭제 전체역살 다운로드

<input type="checkbox"/>	제품명	유형표시	기능성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	제조사	원료성분명	용도	검사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협 방성용 크림			씻어내는 제품(V)	장협화장품	정제수	수출전용(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협 방성용 크림			씻어내는 제품(V)	장협화장품	글리세린	수출전용(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협 방성용 크림			씻어내는 제품(V)	장협화장품	하이드록시프로린	내수용(D)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협 방성용 크림			씻어내는 제품(V)	장협화장품	정제수	내수용(D)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협 방성용 크림			씻어내는 제품(V)	장협화장품	나무잎/씨추출물	수입용(I)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협 방성용 크림			씻어내는 제품(V)	장협화장품	비지-9다이메티콘	수입용(I)	

뒤로 임시저장 제출

- ✓ 행추가후화면에서직접입력
- ✓ 유형표시,기능성,용도는해당하는값클릭하여선택입력
- ✓ 동일한제품에대해 제품명,유형표시,제조사,용도가동일한경우 “복사하기”기능이용
- ✓ 임시저장버튼클릭시자동원료검사 (표준명,금지여부확인)
- ❖ 반드시수정필요사항이없는경우에만최종제출버튼클릭

2. 시스템개선내용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목록 작성 > 엑셀파일로 업로드 하기

원료목록 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원료목록 작성

원료목록 작성 (엑셀파일로 업로드하기)

엑셀 업로드

엑셀서식 다운로드

표준화 신청

배합금지성분 목록 조회

총 0건의 자료가 등록되었습니다.

No	제품명	유형	기능성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	제조업자	원료성분명	검사결과	용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뒤로

제출

- ✓ 다운로드한 엑셀서식에 원료목록 내용작성 및 저장하여 엑셀 업로드
- ✓ 업로드 또는 임시저장 버튼 클릭시 자동 원료검사 (표준명, 금지여부 확인)
- ❖ 반드시 수정 필요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최종 제출버튼 클릭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목록 작성 > 업로드 양식

신규 추가

일련번호	제품명	유형 표시	기능성화장품 유형	기능성 화장품 품목기준코드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	제조사 상호	원료 성분명	용도
1	한국사랑화장품	카8				대한화장품협회	정제수	E
2	한국사랑화장품	카8				대한화장품협회	감초추출물	E

2019.3.14(목) 이후에
추가되는 보고항목

- ✓ 용도는 생산실적작성시 입력했던 항목과 동일하며, 수출용인 경우에 한해 “E” 라고 표시
- ✓ 기능성화장품 유형, 기능성화장품 품목기준코드,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19.3.14 이후에 추가되는 보고항목임
- ❖ 반드시 수정 필요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최종 제출버튼 클릭

2. 시스템 개선 내용

원료 목록 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 목록 작성 > 원료 목록 보고 항목

■ 일련번호

- 위에서부터 순서로 아라비아숫자를 기재

■ 제품명

- 생산실적에 보고하는 제품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 수출용 제품인 경우에도 원료 성분명은 국문으로 기재

■ 유형표시

- [참고] 유형별 분류에 따른 유형표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

예)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8) 로션, 크림”에 해당하는 경우 “카8”로 기재

※ 생산실적에 보고하는 유형표시와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원료 목록 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 목록 작성 > 원료 목록 보고 항목

■ 제조업자 상호

- 보고하는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자 상호

※ 정확한 상호를 기입해야 함

※ 제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여러 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한 경우 제조업자 별로 각각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함

※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한 제조업자의 생산 실적 및 원료 목록은 보고 대상이 아님

■ 원료 성분명

- 원료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기재

-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으로 각각 기재

※ 수출용 제품인 경우에도 원료 성분명은 국문으로 기재

※ 표준화된 명칭은 “전성분 표시”에 사용되는 성분사전의 명칭을 의미함

2. 시스템 개선 내용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목록 작성 > 원료목록 보고 항목

■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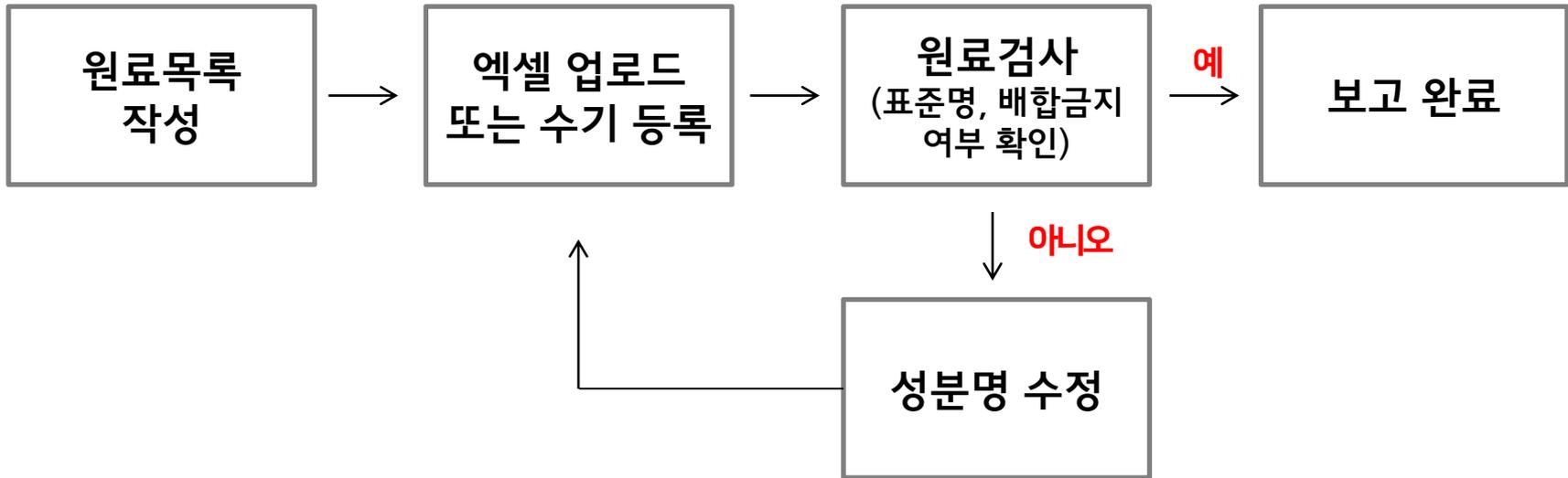
- 수출전용인 경우에만 “E”로 기재

※ 생산실적에 보고하는 용도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구분	표시기호(약칭)	내용
수출용	E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 ※ “용도”란에 “E”로 기재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목록 작성 > 원료검사



- ✓ 표준화된 명칭으로 원료목록 보고해야 함.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표준명 미등록 원료”라고 안내 됨
- ✓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금지 원료 포함) 원료목록 자료 제출은 가능하나 **추후 해당 성분명을 표준화 명칭으로 수정해야 함**
- ✓ 원료 검사 후 “수정이 필요한 목록”만 다운로드 받아 수정 후 “재업로드”시 자동 원료 검사 가능
- ❖ 반드시 수정 필요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최종 제출 버튼 클릭

2. 시스템개선내용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목록 작성 > 제출 전 확인 팝업 예시

1 원료목록보고 제출

 작성하신 원료목록에 표준명 미등록 원료가 있습니다.

표준명칭이 없으신 경우, 성분명표준화위원회 회의에 신청하신 후 부여 받은 명칭으로 수정하신 후 추후 반드시 변경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화 명칭과 맞지 않을 경우

2 원료목록보고 제출

 작성하신 원료목록에 변환되지 않은 구명칭 원료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판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환되지 않은 구명칭 원료가 있을 경우

3 원료목록보고 제출

 작성하신 원료목록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판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수 배합금지 성분이 있을 경우

4 원료목록보고 제출

 원료목록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 제출 확인 팝업

✓ 표준화명칭이 아니거나 배합금지 성분이 있을 경우 좌측과 같은 팝업창으로 안내

❖ 반드시 수정 필요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최종 제출!

원료목록보고 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목록 작성 > 원료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 혼합물은 개별 성분으로 기재할 것

- 개별 원료로 분리하여 각 셀당 한 개 원료 기재

잘못된 예	올바른 예	비고
정제수&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라피노오스&산자나무추출물	정제수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라피노오스	
	산자나무추출물	
정제수*안개초뿌리추출물	정제수	
	안개초뿌리추출물	
정제수/글리세린/포도씨추출물	정제수	"/"는 단일원료의 경우에만 사용
	글리세린	
	포도씨추출물	

※ 기호 “/”의 사용 : 단일성분으로 간주하는 복수원료의 성분명칭을 [/] (slash, 사선)로 이어서 표시 (예 : 아크릴레이트/C1-2석시네이트/하이드록시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원료목록보고 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목록 작성 > 원료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 원료성분명을 표준화된 명칭으로 기재해야 함

- 협회 성분사전 홈페이지(www.kcia.or.kr/cid) 참조

표준명	기타 한글명	영문명
정제수	물	Water
	아쿠아	Aqua
	워터	Purified Water
		Distilled Water

■ 엑셀 붙여넣기 오류 주의할 것

- 동일 원료 작성 시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경우,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인하여 오류 발생 주의

오류 예	비고
금	"금(Gold, CI 77480)"을 "금요일"로 잘못 인식하여 발생하는 오류
토	
일	

원료목록보고 보고 프로세스

STEP 2 : 원료목록 작성 > 업로드 작성 예시

신규 추가

일련번호	제품명	유형 표시	기능성화장품 유형	기능성 화장품 품목기준코드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	제조사 상호	원료 성분명	용도
1	000 로션	카8				대한화장 품협회	정제수	E
2	000 로션	카8				대한화장 품협회	감초추출물	E
3	000 로션	카8	2019.3.14(목) 이후 보고항목			대한화장 품협회	참-추출	
4	00 클렌저	다1				사랑화장 품	전성분 표기와 같이 한글로 표준화된 성분명을 한 셀에 한 성분을 기재	
5	00 클렌저	다1				사랑화장 품	글리세린	
						사랑화장 품	1,2-헥산다 이올	
						사랑회	각국꽃추출	

“일련번호”는 위에서 순서
대로 중복되는 숫자 없이,
순차적으로 기재

화장품 제품의 제조업자 기재
(원료의 제조업자 아님)

대한화장품협회

Chapter 3

3. 원료목록 사전보고

- 원료목록사전보고 체계 안내
- 원료목록보고 프로세스
- 자주하는 질문 (FAQ)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 안내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추진 목적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를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안전관리 강화

체계 전환

- ✓ 기존: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년도 2월까지 보고 (‘19.1.1~’19.2.28)
- ✓ 개선: **유통 • 판매 전** 사전 보고 (‘19.3.14~)

※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 전 표준통관예정 보고 시 제품과 원료목록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음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 안내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화장품법」 제5조제4항(영업자의 의무 등)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

-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 안내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원료목록 사후 보고

원료목록 사전 보고



보고대상

제조판매업자

책임판매업자 (제조업자 아님)



보고기간

전년도 사용원료 다음해 2월까지 보고

유통 • 판매 전 사전보고

〈생산실적보고와 동시 보고〉

- ✓ 생산실적 보고 후 원료목록 보고
(생산실적 없어도 동일하게 “실적 없음”으로 보고)
- ✓ 작년과 동일한 처방이어도 한 해 동안 생산된 제품이
면 해당 품목에 대해 원료목록 보고
- ✓ 원료 처방 변경된 제품은 생산실적 보고 시 “제조월”
에 처방이 변경된 월(달)을 기재

〈생산실적보고와 별도 보고〉

- ✓ 원료목록 보고 후 생산실적 보고 (원료목록은 유통
판매 전에 보고)
- ✓ 보고 제품 중 처방변경이 없을 경우 재보고할 필요
없음 (최초 보고 후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변경 보고)
- ✓ 원료 처방이 변경된 제품은 “변경보고”를 통해 수정
된 내용을 보고해야 함 (변경보고 이력 조회 가능)



보고사항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1. 보고 유형 선택



최초 보고



변경 보고



제품 단종

- ✓ 제품 유통 판매 전 최초 보고
- ✓ 실적보고 웹사이트에 수기등록 또는 엑셀등록 방식으로 보고
- ✓ 보고한 제품의 원료성분명 또는 처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변경보고
- ✓ 변경한 이력 조회 가능하므로 실제 성분의 처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보고할 것
- ✓ 보고한 제품이 단종된 경우에 한해 단종보고
- ✓ 단종 보고된 제품을 다시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보고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면 됨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2. 원료목록 작성



1.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

보고 회사,
보고 담당자 정보 작성

정보 불러오기 가능

2. 원료목록
작성

1. 수기등록
- 성분명/제품유형/기능성유형 검색 팝업 기능
 - 임시저장시 자동원료검사(표준명, 배합금지여부 등)

2. 엑셀등록
- 업로드 및 임시저장시 자동원료검사(표준명, 배합금지여부 등)
 - 확장자 호환(xls, xlsx 모두 가능)

3. 제출

원료목록 식약처 제출 보고서 (5호서식, 6호서식) 인쇄 가능

원료목록보고시스템 개선사항

- ✓ 등록절차 간소화 (이전 보고내용 불러오기, 임시저장하기, 업로드시 자동원료검사, 원료목록내용 복사하기 등)
- ✓ 서버 및 오류 개선 (엑셀파일 xls, xlsx 확장자 호환, 데이터 업로드 로딩 시간 단축 및 오류 방지)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원료목록 보고양식

일련번호	제품명	유형 표시	기능성화장품 유형	기능성 화장품 품목기준코드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	제조업자 상호	원료 성분명	용도
1	한국사랑화 장품	카8	F1	2019000001	W	대한화장 품협회	정제수	E
2	한국사랑화 장품	카8	F1	2019000001	W	대한화장 품협회	감초추출물	E

2019.3.14(목) 이후 보고항목

■ 일련번호

- 위에서부터 순서로 아라비아숫자를 기재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원료목록 보고양식

■ 제품명

- 생산실적에 보고하는 제품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 수출용 제품인 경우에도 원료 성분명은 국문으로 기재

■ 유형표시

- [참고] 유형별 분류에 따른 유형표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

예)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8) 로션, 크림”에 해당하는 경우 “카8”로 기재

※ 생산실적에 보고하는 유형표시와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원료목록 보고양식

■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기능성화장품만 해당)

-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을 구분 기재 (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란에 각 해당 표시기호를 기재

구분	표시기호(약칭)	내용
기능성 화장품	F1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미백)
	F2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주름개선)
	F3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자외선차단)
	F4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미백+주름개선)
	F5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미백+자외선차단)
	F6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주름개선+자외선차단)
	F7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원료목록 보고양식

■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기능성화장품만 해당)

-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을 구분 기재 (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란에 각 해당 표시기호를 기재

구분	표시기호(약칭)	내 용
기능성 화장품	F8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염모, 탈염탈색)
	F9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제모)
	F10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탈모 완화)
	F11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여드름성 피부 완화)
	F12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아토피성 피부 보습)
	F13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F14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 (새로운 추가된 기능성 기타 복합유형)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원료목록 보고양식

■ 기능성화장품 품목기준코드 (기능성화장품만 해당)

-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은 “품목기준코드”를 입력하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은 “보고일련번호”를 입력함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원료목록 보고양식

■ 기능성화장품 품목기준코드 (기능성화장품만 해당)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확인 방법

- ①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하단의 “품목기준코드”를 입력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 의약품 등 정보 > 화장품 제 품정보 > 업체명 검색 > 엑셀다운로드 > “품목기준코드” 입력

제 호		기능성화장품 <input type="checkbox"/> 심사	결과통지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심사	
상 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조판매업 등록번호	
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	
심 사 항 목	제 품 명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제 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준 및 시험방법		
제조소(원)			
비 고			
참 조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목기준코드 201900001

< 화장품제품정보 > Home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화장품제품정보

제품명	업체명
심사일자 0000 ~ 0000	업종구분 -전체-
[검색] [초기화]	

총 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엑셀다운로드]

제품명	심사번호	품목기준코드	심사일자	업체명
-----	------	--------	------	-----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원료목록 보고양식

■ 기능성화장품 품목기준코드 (기능성화장품만 해당)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 의약품 등 정보 > 화장품 보고제품정보 > 업체명 검색 > 엑셀다운로드 > “보고일련번호” 입력

< **화장품보고제품정보** Home > 경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화장품보고제품정보

제품명 <input type="text"/>	업체명 <input type="text"/>
보고완료일자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업체구분 <input type="text" value="-전체-"/>
<input type="button" value="Q 검색"/>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총 0 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업체구분	보고일련번호	제품명	보고완료일	업체명(공장명)	부서접수번호

36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원료목록 보고양식

■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 여부

-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W,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N이라고 기재

■ 제조업자상호

- 보고하는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자상호

※ 정확한상호를 기입해야 함

※ 제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여러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한 경우 제조업자별로 각각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함

※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한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은 보고 대상이 아님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원료목록 사전보고 프로세스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 원료목록 보고양식

■ 원료 성분명

- 원료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기재
-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으로 각각 기재

※ 수출용 제품인 경우에도 원료 성분명은 국문으로 기재

■ 용도

- 수출전용인 경우에만 “E”로 기재

※ 생산실적에 보고하는 용도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구 분	표시기호(약칭)	내 용
수출용	E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 ※ “용도”란에 “E”로 기재

3. 원료목록 사전보고

자주하는 질문 (FAQ)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Q: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원료목록은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A: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19.3.14 이후)
원료목록은 유통 · 판매 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Q: 사전보고로 전환되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A: 원료목록이 사전보고로 전환되면 “최초 보고”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원료의 처방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보고”를 통해 변경사항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18.3.13화장품법개정 · 공포 및 ‘19.3.14시행)



Q: ’19년도 1월부터 3월13일까지 새로 유통 · 판매된 제품의 원료목록은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A: ’19년도 1월부터 3월13일까지 새로 유통 · 판매된 제품의 원료 목록은 ‘19.3.14 ~ ‘20.2.28 (생산실적 보고기간)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